

청소년 진로캠프 수탁기관 재협약 동의안

의안 번호	174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19. 10. .

제안자 : 평창군수

□ 제안이유

-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」 제7조에 의거 청소년 진로캠프 운영평가에 따라 수탁기관(서울대 평생교육원)과 재협약에 대하여 평창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□ 관련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(사무의 위임 등)
-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(의회의 동의)

□ 주요내용

○ 사업개요

- 기 간 : 2019. 7월 ~ 8월(방학기간)
- 장 소 :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
- 대 상 : 242명 - 관내 고교 1학년 학생
- 주요내용 : 대학생 멘토&멘티 운영을 통한 관내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및 미래설계
- 수탁자 : 서울대 평생교육원
- 소요예산 : 120,000천원

○ 추진실적

- 참가인원 : 225명(학교별 2박3일 / 3기)
- 청소년 진로캠프 수탁기관 재협약 의결(평생교육협의회) : 2019. 9. 26.
· 학생들이 프로그램 참여 및 멘토링 활동 만족도 등 98% 이상

- 인솔교사 참가로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참여하여 긍정적 효과
- 우리군의 미래 인재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을 위한 진로캠프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함.

□ 향후계획

- 민간위탁 군의회 동의 : 2019. 10월
- 청소년 진로캠프 재협약 : 2019. 12월

붙임 : 관계법령 발췌서 1부.

관계법령 발췌서

① 지방자치법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

제7조(의회의 동의)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군수는 재위탁 또는 재협약을 할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수립하여 그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